

5) 50세 이상 60세 미만	5	
6) 60세 이상 70세 미만	3	
7) 70세 이상 80세 미만	2	
8) 무응답	7	
합 계	78	

#### 6. 종교별 현황

내 역	응답인원수	비 고
1) 기독교	27	
2) 불교	10	
3) 천주교	5	
4) 무교	23	
5) 무응답	13	
합 계	78	

#### 7. 출소 구금시설별 현황

내 역	응답인원수	비 고
1) 경찰서	4	
2) 공주치료감호소	1	
3) 서울구치소	20	
4) 성동구치소	25	
5) 영등포구치소	7	
6) 수원구치소	1	
7) 광주교도소	1	
8) 대전교도소	1	
9) 목포교도소	1	
10) 부산교도소	1	
11) 수원교도소	2	
12) 안양교도소	2	
13) 영등포교도소	1	
14) 의정부교도소	2	
15) 인천교도소	2	
16) 청송교도소	1	
17) 홍성교도소	1	
18) 무응답	5	
합 계	78	

#### 8. 입소전 직업별 현황

내 역	응답인원수	비 고
1) 공무원	1	

2) 자영업	17	
3) 학 생	6	
4) 회사원	7	
5) 무 직	4	
6) 노 동	6	
7) 사회운동	1	
8) 기 타	17	
9) 무응답	19	
합 계	78	

#### 9. 적용 범률별 현황

내 역	응답인원수	비 고
1) 보안법	9	
2) 집시법	3	
3) 특기법	5	
4) 형법	7	
5) 강도상해	1	
6) 성폭력	1	
7) 폭력행위 등	10	
8) 사기죄	2	
9) 절도죄	3	
10) 횡령죄	1	
11) 살인죄	2	
12) 공무원법	1	
13) 도로교통법	2	
14) 마약류관리법	1	
15) 여신금융업법	1	
16) 위생법	1	
17) 유사수신법	1	
18) 음비법	1	
19) 치료감호	3	
20) 무응답	23	
합 계	78	

#### 10. 전과 횟수별 현황

내 역	응답인원수	비 고
1) 0회	34	
2) 1회	22	
3) 2회	6	
4) 3회	3	

5) 4회	3
6) 5회	6
7) 6회	1
8) 7회	1
9) 10회 이상	2
합 계	78

11. 복역 기간별 현황		
내 역	응답인원수	비 고
1)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4	
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	
3)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8	
4)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4	
5)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6)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4	
7)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3	
8)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	
9)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1	
10)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4	
11) 1년 이상 2년 미만	11	
12) 2년 이상 3년 미만	2	
13) 3년 이상 4년 미만	3	
14) 5년 이상 10년 미만	2	
15) 무응답	17	
합 계	78	

12. 석방 형태별 현황		
내 역	응답인원수	비 고
1) 집행유예	13	
2) 가석방	7	
3) 만기출소	2	
4) 공소기각	1	
5) 금보석	1	
6) 미결상태	5	
7) 특사	2	
8) 무응답	47	
합 계	78	

## 교도소, 구치소 설문조사 결과

### I. 변호사 접견

1. 교도소(구치소)에 입소할 때 재소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고지 받은 내용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변호사 접견권 ..... 16명
- ② 법률구조공단제도 ..... 1명
- ③ 당직변호사제도 ..... 3명
- ④ 법전의 활용 가능성 ..... 0명
- ⑤ 변호사 접견권과 법률구조공단제도 ..... 4명
- ⑥ 변호사 접견권과 당직변호사제도 ..... 3명
- ⑦ 변호사 접견권, 당직변호사제도, 법전의 활용 가능성 ..... 2명
- ⑧ 변호사 접견권과 법전의 활용 가능성 ..... 2명
- ⑨ 아무 것도 고지받지 못했다 ..... 40명
- ⑩ 무응답 ..... 7명

1-1. (고지받았다는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고지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지받았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① 문서 ..... 4명
- ② 구두(말) ..... 29명

1-2. (고지받지 못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고지받지 못했다면 위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거나 설명을 요청했을 때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예	17명
② 아니오	15명
③ 기타	12명

2. 수감생활중 생긴 일 때문에 변호사 접견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23명
② 아니오	47명
③ 기타	2명
④ 무응답	6명

(변호사 접견을 한 경험이 있는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2-1. 어떤 장소에서 변호사 접견을 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미결수였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실에서 했다	49명
② 미결수였지만, 일반 면회실에서 했다	1명
③ 기결수였는데, 변호인 접견실에서 했다	3명
④ 기결수였기 때문에 일반 면회실에서 했다	2명
⑤ 기타	3명

2-2. 변호사 접견을 할 때 교도관이 입회하였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교도관이 그냥 보이는 곳에 있었다	40명
② 교도관이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 내용을 들었다	12명
③ 교도관이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	1명
④ 기타 (기억이 나지 않는다)	1명
⑤ 기타 (교도관이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 내용을 듣고 기록하였다)	1명

2-3. 교도관으로부터 접견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견중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있다	12명
------	-----

② 없다	46명
------	-----

2-4. 교도관으로부터 접견시간 초과를 이유로 강제로 접견중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있다	8명
② 없다	46명

2-5. 변호사와 접견한 후 교도관으로부터 변호사와 나눈 얘기에 대해 진술하기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있다	1명
② 없다	57명

3. 징벌조사중이거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또는 징벌을 받고 있었을 때 변호사 접견이 가능했습니까?

① 변호사 접견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5명
② 변호사 접견이 불가능한 줄 알고 신청도 안했다	2명
③ 변호사를 접견할 생각이 없었다	5명
④ 당시 미결수였는데,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었다	4명
⑤ 당시 기결수였는데,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었다	2명
⑥ 기타 (징벌이 없었다)	2명
⑦ 무응답	58명

4. 법전이나 행형법 관련도서를 교도소(구치소)측에 요구하면 볼 수 있습니까?

① 볼 수 있었다	13명
② 볼 수 없었다	24명
③ 가능하긴 했지만 (교정당국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5명
④ 기타	12명
⑤ 요구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	1명

⑥ 요구하지 않았다	4명
⑦ 요구하지 않고 영치해 준 관련 도서를 보았다	1명
⑧ 무응답	18명

4-1. ('볼 수 없었다'고 대답하신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법전의 구매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구매를 시도했으나, 결국 구입하지 못했다	5명
② 구매를 시도하여 구입하였다	3명
③ 구매를 시도해 본 적이 없다	23명

## II. 소장 면담 및 청원

1. 교도소(구치소)에 입소할 때 청원 등 불복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까?  
(# 불복신청이란, 재소자가 교정당국의 부당한 처사나 위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 소장과의 면담,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 등 권한있는 다른 행정기관에 잘못된 처사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그렇다	11명
② 아니다	55명
③ 기타	1명
④ 무응답	11명

1-1. 고지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지받았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문서	7명
② 구두(말)	7명

2. 수감생활중 생긴 일 때문에 소장과의 면담을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10명
------	-----

② 없다	63명
③ 무응답	5명

2-1. ('있다'고 대답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그렇다	4명
② 아니다	6명
③ 면담을 시켜주겠다고 대답해 놓고 실제로는 시켜주지 않았다	2명

2-1-1. (면담을 하신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지 몇 번만에 면담이 성사되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1번만에	2명
② 2 ~ 3번	1명
③ 4 ~ 7번	2명
④ 8번	0명
⑤ 2달 이상	1명

2-1-2. (면담을 하신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지 몇 일만에 면담이 성사되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1 ~ 2일	2명
② 3 ~ 5일	2명
③ 6 ~ 8일	2명
④ 9 ~ 10일	0명
⑤ 기타	2명

2-1-3. (면담을 하지 못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정당국은 어떤 형태로 귀하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거부통지를 하였다	0명
-------------	----

② 거부통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묵살했다	7명
③ 기타	3명
④ 모르겠다	4명
⑤ 소장이 아닌 다른 직원과 면담을 했다	1명

3.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려고 집필신청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해 보았다면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까)?

① 있다	2명
② 집필신청을 한 적이 있고, 2번까지 시도해 보았다	2명
③ 없다	60명
④ 무응답	14명

3-1.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위한 집필신청을 해 본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집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그렇다	1명
② 아니다	3명
③ 받아들여진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1명

(청원을 위한 집필신청이 받아들여진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3-1-1. 집필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몇 번이나 집필신청 요구를 하였습니까?(중복

응답 포함)	2명
① 1번	0명
② 2 ~ 3번	0명
③ 4 ~ 7번	1명
④ 8번 이상	

3-1-2. 청원서를 제출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뒤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1개월 이내	1명
② 1개월 ~ 2개월	1명
③ 3개월 ~ 5개월	0명
④ 5개월 이상	0명
⑤ 답변을 받지 못했다	1명

3-1-3. 청원의 결과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기각	1명
② 각하	2명
③ 시정조치	0명
④ 처우에 반영	0명

3-1-4. 어떤 내용을 청원하였습니까(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① 석방탄원	1명
② 일하고 싶다	1명

4. 수감생활중 순회점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순회점검이란 교정시설의 상급기관(교정청, 법무부 등)에서 정기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처우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재소자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고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① 있다	28명
② 없다	30명
③ 무응답	20명

5. 순회점검 때 검열관에게 말(구두)이나 또는 문서로 청원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3명
② 없다	50명
③ 무응답	25명

5-1. (순회점검 때 검열관에게 청원을 해 본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검열관에게 청원을 하려고 할 때 교도관들에게 제지를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3명  
② 없다 ..... 12명  
③ 교도관이 사전에 "순회점검시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 1명

5-2. (순회점검 때 검열관에게 청원을 해 본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청원 때문에 검열관이 교정시설을 떠난 다음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① 있다 ..... 2명  
② 없다 ..... 11명

6. 수감생활중 생긴 일 때문에 징벌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을 때 청원이나 소장과의 면담이 가능했습니까?

- ① 그렇다 ..... 8명  
② 아니다 ..... 10명  
③ 면담신청 자체를 모르겠다 ..... 1명  
④ 무응답 ..... 59명

### III. 서 신

1. 수감생활중 생긴 일 때문에 형사고소 또는 소송을 위해서 집필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2명  
② 없다 ..... 61명  
③ 무응답 ..... 15명

1-1. (소송 등을 위해 집필신청을 해 본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집필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① 그렇다 ..... 2명  
② 아니다 ..... 3명

1-2. (집필신청이 받아들여진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집필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몇 번이나 집필신청 요구를 하였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① 1번 ..... 1명  
② 2 ~ 3번 ..... 2명  
③ 4 ~ 7번 ..... 0명  
④ 8번 이상 ..... 1명

2. 수감생활중 생긴 일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밖에 있는 친지나 친구들에게 변호사 선임 등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 발송신청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4명  
② 아니다 ..... 53명  
③ 무응답 ..... 21명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발송신청을 해 본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2-1. 교정당국에 의해 편지의 발송이 불허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몇 번이나 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① 있다 ..... 2명  
② 없다 ..... 17명

2-2. 편지의 발송이 불허되었다면 교도관이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중복응답 포함)

- ①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불허사유를 고지받고 편지를 반환받거나 폐기처분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3명  
② 불허 직후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불허사유와 폐기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했고, 발송신청한 편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물어본 끝에, 겨우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명
③ 전혀 통보 받지 못했다	8명
④ 통보받을 때도 있었고 전혀 통보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	2명
⑤ 편지 발송 횟수를 제한했었다	1명

3. 직접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하여 발송신청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4명
① 있다	4명
② 없다	51명
③ 무응답	23명

3-1.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발송신청을 해 본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편지의 발송이 교정당국에 의해 불허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1명
① 있다(5번)	1명
② 없다	10명

3-2.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발송신청을 해 본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편지의 발송이 불허되었다면, 교도관이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2명
①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불허사유를 고지받고 편지를 반환받거나 폐기처분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명
② 불허 직후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불허사유와 폐기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했고, 발송신청한 편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 차례 물어 본 끝에, 겨우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명
③ 전혀 통보 받지 못했다	4명
④ 통보 받을 때도 있고 전혀 통보받지 못할 때도 있다	2명

4.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받지 못했거나, 변호사가 보낸 편지 내용중 일부가 삭제된 채 받은 적이 있습니까?	0명
① 있다	0명
② 없다	35명
③ 무응답	43명

#### IV. 징벌

1. 징벌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2명
① 있다	12명
② 없다	54명
③ 무응답	12명
2. 징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57명
① 있다	9명
② 없다	57명
③ 무응답	12명
3. 징벌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64명
① 1 ~ 2일	8명
② 3 ~ 4일	1명
③ 5 ~ 7일	1명
④ 8 ~ 13일	0명
⑤ 14일 이상	4명
⑥ 무응답	64명

(다음 문항부터는 징벌 경험이 있는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4. 어떤 이유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 |  |    |
|--|----|
| ① 부정서신 교부를 이유로                         | 1명 |
| ② 식사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 식기를 던지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 1명 |
| ③ 오물을 투척해서                             | 1명 |
| ④ 서울구치소 처우개선(식수에 녹물) 문제와 관련, 항의했다는 이유로 | 1명 |
| ⑤ 싸워서                                  | 3명 |

5. 어떤 종류의 징벌처분을 받았습니까?

- |                             |    |
|-----------------------------|----|
| ① 경고                        | 1명 |
| ②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 열람의 제한     | 1명 |
| ③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 2명 |
| ④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 0명 |
| ⑤ 2월 이내의 금치                 | 2명 |
| ⑥ 2개월 이내의 금치중 그 기간이 7일인 경우  | 2명 |
| ⑦ 2개월 이내의 금치중 그 기간이 30일인 경우 | 1명 |

6. 징벌을 받기 전 징벌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                          |     |
|--------------------------|-----|
| ① 그렇다                    | 0명  |
| ② 아니다                    | 13명 |
| ③ 출석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다 | 2명  |

6-1. (징벌위원회에 출석했던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징벌위원회에서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   |    |
|---|----|
| ①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 4명 |
| ②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었고 대리인(1급수의 동료 재소자)을 통해 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 | 0명 |
| ③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시간을 너무 적게 주어 설명이 부족했다           | 1명 |

- |                                |    |
|--------------------------------|----|
| ④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 0명 |
|--------------------------------|----|

7. 징벌의 종류와 기간, 징벌사유는 어떻게 통지 받았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                                     |    |
|-------------------------------------|----|
| ① 징벌위원회에서 소장으로부터 구두(말)로 통지받았다       | 3명 |
| ② 징벌위원장(소장)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면으로 정식 통보받았다 | 1명 |
| ③ 소장 이외의 교도관으로부터 구두로 통지받았다          | 4명 |
| ④ 징벌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비로소 통지받았다    | 1명 |
| ⑤ 지나가는 말로 내가 징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3명 |
| ⑥ 기타                                | 1명 |

8. 징벌처분을 받았을 때 교정당국으로부터 징벌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       |     |
|-------|-----|
| ① 그렇다 | 1명  |
| ② 아니다 | 16명 |

9. 징벌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    |
|--|----|
| ①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였다                                      | 0명 |
| ②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교정당국에 의해 제지당했다                  | 0명 |
| ③ 소장과 면담을 하였다  | 0명 |
| ④ 소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 2명 |
| ⑤ 사법적 절차를 밟았다(소송제기/ 관련자 형사고소)                          | 0명 |
| ⑥ 사법적 절차(소송제기/ 관련자 형사고소)를 밟으려 했으나 교도소 (구치소)측으로부터 제지당했다 | 0명 |
| ⑦ 기타 (사고가 없었다)   | 3명 |
| ⑧ 없음   | 3명 |
| ⑨ 약 이틀동안 징벌방 및 먹방에 가두어 둠                               | 1명 |
| ⑩ 관계 교도관으로부터 계장을 면담하였음                                 | 1명 |

⑪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교정당국에 의해 제지당해서 소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고, 그래서 사법적 절차(소송 제기/ 관련 자 형사고소)를 밟으려 했으나 교도소(구치소)측으로부터 제지당했다 ..... 1명

10. 징벌조사 기간중이나 징벌 집행중 계구(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를 착용한 일이 있습니까(있다면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징벌조사기간 중에 계구를 착용한 일이 있다 ..... 6명  
② 징벌집행기간 중에 계구를 착용한 일이 있다 ..... 4명  
③ 착용한 경험이 없다 ..... 6명

(계구를 착용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10-1. 계구를 착용한 적이 있다면 어떤 계구를 착용하였습니까(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포승 ..... 1명  
② 수갑 ..... 9명  
③ 사슬 ..... 0명  
④ 안면보호구 ..... 0명  
⑤ 포승, 수갑 ..... 5명  
⑥ 포승, 수갑, 사슬 ..... 1명  
⑦ 포승, 수갑, 안면보호구 ..... 1명  
⑧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 ..... 1명

10-2. 가장 오랫동안 계구를 착용한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① 1 ~ 3일 ..... 4명  
② 4 ~ 7일 ..... 2명  
③ 8일 ~ 13일 ..... 0명  
④ 2주 ~ 1달 ..... 2명  
⑤ 1달 ~ 2달 ..... 2명

⑥ 2달 이상 ..... 4명

11. 징벌을 받고 있을 때 당신이 의사의 검진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의사로부터 검진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① 있다 ..... 3명  
② 없다 ..... 17명

## V. 의료

1. 교도소(구치소)에 입소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지받은 내용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정기검진이 있다는 것 ..... 0명  
② 몸이 아프면 병사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 ..... 0명  
③ 의무관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 12명  
④ 약품을 자비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 ..... 3명  
⑤ 외부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 ..... 1명  
⑥ 몸이 아프면 병사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과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 1명  
⑦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약품을 자비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 ..... 3명  
⑧ 약품을 자비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과 외부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 ..... 1명  
⑨ 몸이 아프면 병사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과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약품을 자비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 ..... 6명  
⑩ 몸이 아프면 병사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과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 ..... 2명  
⑪ 몸이 아프면 병사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과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및 기타	1명
⑫ 정기검진이 있다는 것과 몸이 아프면 병사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과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및 약품을 자비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	2명
⑬ 몸이 아프면 병사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과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약품을 자비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 및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6명
⑭ 정기검진이 있다는 것과 몸이 아프면 병사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과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약품을 자비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 및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10명
⑮ 아무 것도 고지받지 못했다	23명
⑯ 무응답	7명

2. 교도소(구치소)에 입소할 때 자격 있는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신체검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31명
② 없다	44명
③ 무응답	3명

2-1.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의 검사를 받았습니까(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키, 몸무게 측정	5명
② 시력 측정	0명
③ 치아 검사	2명
④ 혈압 검사	1명
⑤ 엑스레이 촬영	2명
⑥ 피 검사	0명
⑦ 소변 검사	0명
⑧ 의사가 청진기 대고 진찰	4명

⑨ 문진(말로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묻는 것)	6명
⑩ 문진(의사가 아닌 교도관이 질문)	1명
⑪ 기타	1명
⑫ 정신병원 감정	1명
⑬ 키, 몸무게 측정 및 엑스레이 촬영	1명
⑭ 키, 몸무게 측정 및 문진	1명
⑮ 의사가 청진기 대고 진찰 및 문진	3명
⑯ 키, 몸무게 측정 및 시력 측정, 엑스레이 촬영	1명
⑰ 키, 몸무게 측정 및 혈압 검사, 엑스레이 촬영	4명
⑱ 키, 몸무게 측정 및 엑스레이 촬영, 문진	2명
⑲ 키, 몸무게 측정 및 혈압 검사, 의사가 청진기 대고 진찰, 문진	1명
⑳ 키, 몸무게 측정 및 치아 검사, 엑스레이 촬영, 문진	1명
㉑ 키, 몸무게 측정 및 시력 측정, 치아 검사, 문진	1명
㉒ 키, 몸무게 측정 및 시력 측정, 치아 검사, 혈압 검사, 피 검사	1명
㉓ 키, 몸무게 측정 및 치아 검사, 엑스레이 촬영	1명
㉔ 키, 몸무게 측정 및 시력 측정, 치아 검사, 혈압 검사, 엑스레이 촬영, 의사가 청진기 대고 진찰, 문진	1명
㉕ 키, 몸무게 측정 및 시력 측정, 치아 검사, 혈압 검사, 엑스레이 촬영, 피 검사, 의사가 청진기 대고 진찰, 문진	1명
㉖ 시력 측정 및 문진, 기타	1명
㉗ 엑스레이 촬영 및 문진	1명
㉘ 피 검사 및 간염 검사	1명
㉙ 키, 몸무게 측정 및 혈압 검사, 엑스레이 촬영, 의사가 청진기 대고 진찰, 문진	1명
㉚ 키, 몸무게 측정 및 혈압 검사, 엑스레이 촬영	1명
㉛ 문진 및 기타	1명
㉜ 무응답	30명

3. 수감생활중(입소할 때를 제외하고) 의사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6명
② 없다	52명
③ 아플 때마다	2명
④ 기억에 없다	1명
⑤ 2주이다	1명
⑥ 월 1회 정도로	1명
⑦ 6개월이다	1명
⑧ 10개월이다	13명
⑨ 무응답	

4. 교도소·구치소에 치과의사(공중보건의 포함)가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15명
② 아니다	17명
③ 모르겠다	37명
④ 무응답	9명

5. 교도소·구치소에 자격 있는 약사가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15명
② 아니다	8명
③ 모르겠다	50명
④ 무응답	5명

6. 몸이 아파 의무과에 가고자 했을 때 의무과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① 쉬운 일이었다	15명
② 보통이었다	23명
③ 힘들었다	20명

④ 거의 불가능했다.	6명
⑤ 무응답	14명

6-1. 의무과에 가기 어려웠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6명
② 의사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8명
③ 교도관이 맘대로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다고 해서	11명
④ 정해진 진료시간(오전 9시 ~ 5시)이 아니라는 이유로	6명
⑤ 기타	10명
⑥ 모르겠다	1명
⑦ 이유는 모르지만 몇 번 신청끝에 허가	1명

6-2. 의무과에 제때 가지 못해서 건강이 악화된 경험이 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있다	9명
② 없다	47명

7. 아파서 의무과에 가면 누가 진찰을 했습니까?	
① 의무관	28명
② 공중보건의	4명
③ 교도관	5명
④ 재소자	2명
⑤ 모르겠다	16명
⑥ 의무관 또는 교도관	1명
⑦ 의무관 또는 재소자	1명
⑧ 교도관 또는 재소자	1명
⑨ 무응답	20명

8. 아파서 의무과(또는 약국)에 갔을 때 누가 약을 조제하였습니까?

① 의무관	11명
② 공중보건의	1명
③ 약사	13명
④ 교도관	5명
⑤ 재소자	4명
⑥ 모르겠다	24명
⑦ 무응답	20명

9. 아팠을 때 병사에 입원하기는 어땠습니까?

① 쉬운 일이었다.	1명
② 보통이었다.	12명
③ 힘들었다.	9명
④ 거의 불가능했다.	14명
⑤ 무응답	42명

10. 교도소·구치소에서 의무관에게 치료받을 때 치료비용을 당신에게 내라고 요구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8명
② 없다	45명
③ 무응답	25명

10-1. (앞서 '예'라고 답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습니까?

① 간염 검사	1명
② 치과(이)	1명
③ 치과치료는 영치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다	1명
④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여 엑스레이, CT촬영, 주사약	1명
⑤ 경찰조사 중 집단구타를 당하여 엑스레이 촬영과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에 드는 경비	1명
-----------	----

10-2. 교도소·구치소에서 의무관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6명
② 없다	34명

11. 외부병원의 진찰이나 진료를 신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8명
② 없다	47명
③ 무응답	23명

11-1. 외부병원으로 나가는 것은 어땠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언제나 가능했다	1명
② 돈이 없이는 어려웠다	11명
③ 돈이 있어도 어려웠다	6명

11-2.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본인	8명
② 교도소·구치소	1명
③ 본인이 부담한 적도, 교도소·구치소에서 부담한 적도 있었다	3명

## 검찰청 구치감 설문조사 결과

### 1. 한번 구속수감 되었을 때 구치감에는 몇 번이나 갔습니까?

① 1번	16명
② 2 ~ 3번	27명
③ 4 ~ 6번	10명
④ 7번 이상	7명
⑤ 무응답	18명

### 2. 구치감에 갇혀 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머물러 있었습니까?

① 1시간 이내	4명
② 1시간 ~ 3시간	13명
③ 3시간 ~ 6시간	18명
④ 6시간 ~ 12시간	20명
⑤ 12시간 ~ 24시간	4명
⑥ 기타	1명
⑦ 모르겠다	1명
⑧ 무응답	17명

### 3. 구치감에 법전이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2명
② 아니다	54명
③ 무응답	22명

### 3-1. 법전을 보고자 담당자에게 요구하였을 때 볼 수 있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그렇다	7명
② 아니다	20명
③ 기타	12명
④ 요구하지 않았다	2명
⑤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1명

### 4. 구치감에 들어가서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25명
② 아니다	28명
③ 신체검사가 없었다	2명
④ 무응답	23명

### 4-1 수치심을 느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① 알몸 검사	4명
② 완전히 발가벗겨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	1명
③ 나이 어린 근무자가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할 때	1명
④ 창피했음	1명
⑤ 항문검사를 한다고 하며 발가벗고 쪼그리라고 할 때	1명
⑥ 신체검사시 1 대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옷을 벗으라고 해서	1명
⑦ 겨드랑이와 가랑이 등의 신체를 더듬기 때문에	1명
⑧ 범죄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1명
⑨ 너무 노골적이었다	1명
⑩ 항문을 들여다 보고 성기를 볼 때	3명
⑪ 나체로 검사하고 항문을 손으로 까라고 할 때	1명
⑫ 가혹한 조사	1명
⑬ 훌딱 벗으라고 하니까	1명

⑯ 알몸 상태에서 몸 전체를 검사하기 때문	1명
⑰ 집단적으로 상·하의를 탈의시킬 때	1명

5. 구치감에 있었을 때 식사는 제공되었습니까?

① 식사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서 굶었다	1명
② 식사가 제때 제공되었다	34명
③ 식사시간이 지난 후 밥을 주었다	8명
④ 구치감에서 식사가 제공되지는 않았고, 구치소에서 싸온 도시락을 주었다	17명
⑤ 기타	2명
⑥ 식사시간이 아니었음	1명
⑦ 무응답	15명

6. 구치감의 위생(청결)상태는 어떠했습니까?

① 깨끗했으며, 청소도 잘되어 있었다	5명
② 적당했다	30명
③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다	30명
④ 무응답	13명

7. 구치감의 환기상태는 어떠했습니까?

① 환기가 잘되었고 실내 공기가 맑았다	7명
② 보통이었다	30명
③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했다	28명
④ 무응답	13명

8. 구치감의 조명상태는 어떠했습니까?

① 적당한 밝기여서 머무는 데 불편이 없었다	13명
② 적당했다	34명

③ 너무 어두워서 생활하기 불편했다	17명
④ 무응답	14명

9. (여름에 간했던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냉방시설이 가동되었습니다?

① 일체의 냉방시설이 없었다	21명
② 냉방시설은 있었으나 틀어주지 않았다	3명
③ 냉방시설을 틀어주었다	7명
④ 기타	1명
⑤ 보행통로에 냉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각 방으로까지 냉기가 전달되지 않아 냉방의 편차가 심했다	1명

10. (겨울에 간했던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난방시설이 가동되었습니다?

① 일체의 난방시설이 없었다	19명
② 난방시설은 있었으나 틀어주지 않았다	5명
③ 난방시설을 틀어주었다	19명
④ 약하다	1명
⑤ 기타	1명

10-1. 구치감에 난방시설이 있었다면 어떤 시설이었습니까(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감방 안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1명
② 감방 안에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7명
③ 감방 안에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6명
④ 감방 안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다	9명
⑤ 복도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5명
⑥ 복도에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6명
⑦ 복도에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3명
⑧ 복도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다	1명
⑨ 복도에 난방시설이 있었다	4명

⑩ 복도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1명
⑪ 무응답	42명

11. (겨울에 간했던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담요나 모포 등 추위를 막기 위한 물품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지급받았다	12명
② 지급받지 못했다	15명
③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다	7명
④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추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8명
⑤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고 그래도 추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3명

12. 구치감에 들어갈 때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를 풀어주었습니까?

① 그렇다	39명
② 아니다	17명
③ 경우에 따라 달랐다	9명
④ 무응답	13명

13. 구치감 안에서도 계구를 착용하였다면, 어떤 계구였습니까(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수갑	21명
② 포승	2명
③ 사슬(연쇄)	1명
④ 안면보호구	0명
⑤ 수갑과 포승	10명
⑥ 수갑, 포승, 사슬(연쇄), 안면보호구	1명
⑦ 계구를 착용하라고 하지 않았다	1명
⑧ 무응답	42명

14. 구치감에서 화장실 사용은 자유로웠습니까?

① 화장실이 감방 안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58명
② 화장실이 감방 밖에 있었지만 직원의 허락을 받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4명
③ 화장실에 가려면 직원들의 심한 간섭을 받아야 했다	2명
④ 기타	1명
⑤ 무응답	13명

15. 구치감 화장실의 위생상태는 어떠했습니까?

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12명
② 보통이었다	30명
③ 사용하기 싫을 정도로 더러워 불쾌했다	24명
④ 무응답	12명

16. 화장실에 차폐막(가리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25명
② 아니다	20명
③ 설치되어 있었지만, 수치심을 느낄 만큼 낮았다	18명
④ 무응답	12명

17. 계구를 착용했던 분은 화장실에 갈 때는 계구를 풀어주었습니까?

① 그렇다	7명
② 아니다(계구를 착용하고 용변을 봐야 했다)	22명
③ 경우에 따라 달랐다	2명
④ 무응답	47명

18. 구치감에서 돈, 담배, 귀중품 등의 소지품을 정당한 과정을 거쳐 영치시키지 않고  
빼앗기거나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5명
② 아니다	52명
③ 무응답	21명

(빼앗기거나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18-1. 어떤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담배	2명
② 담배와 라이터	4명

18-2. 누가 소지품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검찰 공무원	0명
② 구치감의 경찰 공무원(의경 포함)	7명
③ 구치소 직원	0명
④ 동료 수감자	0명

19. 구치감에서 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5명
② 아니다	50명
③ 무응답	23명

(구치감에서 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19-1. 누가 가혹행위를 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검사	1명
② 검찰 공무원	0명
③ 구치감의 경찰 공무원(의경 포함)	4명
④ 구치소 직원	1명
⑤ 동료 수감자	3명

19-2. 어떤 이유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했고 어떤 종류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까(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중복응답 포함)	
① 이유없이	1명
② 팬히 시범적으로	1명
③ 죄명을 보고	1명
④ 성고문	1명
⑤ 반말, 폭언에 항의한 경우 폭압적인 분위기 조성	1명
⑥ 미결신분인데도 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심하게 대했고 욕을 들어야 했다	1명
⑦ 몸이 아픈 상태라 쉽게 거동할 수 없어 수용자 중 가장 약하므로 대질시 폭행을 당했다	1명

20. 구치감에서 아팠을 때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가능했습니까?	
① 그렇다	16명
② 아니다	15명
③ 아픈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27명
④ 무응답	20명
21. 경찰서의 유치장과 비교하여 검찰의 구치감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① 입병하기가 까다롭고 돈이 없어 진단을 받을 수가 없기에	1명
② 검찰이 너무 너무 나쁘다	1명
③ 청결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식사문제 또한 청결하지 않다	1명
④ 생활시설, 위생상태, 처우 등 전반적으로 유치장이 구치감보다 훨씬 양호하다	1명
⑤ 청결상태, 냉난방시설	1명
⑥ 청소 미비, 도서 미비치, 조명 어두움, 변기 지저분함, 한방에 너무 많은 인원(10명)	1명
⑦ 너무 좁고 답답했다	1명

⑧ 모르겠다	1명
⑨ 조사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수갑, 포승을 하고 있어야 하는 점	1명
⑩ 청결하지 못했고 악취가 심했다	2명
⑪ 냉난방시설, 환기, 조명, 화장실, 식사문제, 불결한 환경, 수치심을 느낄 만큼 위압적인 교도관들의 태도	1명
⑫ 구치감의 환경(청결, 냉난방, 환기 채광)이 열악하다	1명
⑬ 둘 다 문제가 있다	1명
⑭ 난방시설	2명
⑮ 너무 지저분함, 가을에 굉장히 추움	1명
⑯ 악취, 어둡고, 냉방이 잘 되지 않는다	1명
⑰ 소독약 냄새와 화장실 냄새는 눈이 따가울 정도이다. 구치소로 이동하려고 대기중에 있던 방은 다리를 뻗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방에 3명이 함께 장시간 있었다	1명
⑱ 계구를 사용하여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다. 조명이 너무 어둡다. 독서 등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장시간 기다리기만 한다. 계구에 묶여 있어 손목, 팔 등이 아프다. 화장실의 악취가 너무 심하고 화장지가 없다	1명
⑲ 식수, 화장지, 청결상태 등이 유치장보다 못하다	1명
⑳ 미결수는 죄인이 아니다, 좀더 자유롭게 해달라	1명
㉑ 양쪽이 비슷하다	1명
㉒ 구치감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아 잘 모르겠다	1명
㉓ 검찰의 구치감은 난방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경찰서 유치장보다 훨씬 추웠다	1명
㉔ 구치감이 더 좋다, 유치장은 밖을 볼 수 없다	1명
㉕ 별 문제 없다	2명
㉖ 계구착용, 냉난방시설이 없다	1명
㉗ 무응답	49명

## 경찰서 유치장 설문조사 결과

- 유치장에 갇혀 있던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 6시간 이내
  - 12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2일 이내
  - 2일 ~ 5일
  - 5일 ~ 10일
  - 10일 이상
  - 무응답
- 유치장 입감시 피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고지받은 내용을  
골라 주십시오.
  - 변호사 접견권
  - 법률구조공단제도
  - 당직변호사제도
  - 법전의 활용 가능성
  - 아무 것도 고지 받지 못했다
  - 변호사 접견권과 법률구조공단제도
  - 변호사 접견권과 당직변호사제도
  - 변호사 접견권과 당직변호사제도와 법전의 활용 가능성
  - 변호사 접견권과 법률구조공단제도와 당직변호사제도와 법전의 활용  
가능성
  - 무응답

3. 법전이나 피의자 권리와 관련한 도서를 유치장측에 요구하면 볼 수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11명
② 아니다	20명
③ 가능하긴 했지만 (경찰서측 사정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3명
④ 기타	13명
⑤ 모르겠다	2명
⑥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1명
⑦ 요구하지 않았다	3명
⑧ 무응답	25명

3-1.(위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법전의 구매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구매를 시도했으나 결국 구입하지 못했다	3명
② 구매를 시도하여 구입할 수 있었다	1명
③ 구매를 시도해 본 적이 없다	19명
④ 모르겠다	1명

4. 유치장 내에서 일반서적의 반입 및 독서가 가능했습니까?

① 그렇다	35명
② 아니다	14명
③ 가능하긴 했지만 일반서적의 반입에는 여러 제한요건들이 있었다	14명
④ 무응답	15명

4-1. 유치장 내에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9명
② 아니다	52명
③ 가능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삭제되어 들어왔다	3명
④ 모르겠다	1명

5. 가능했지만 신문을 볼 수 없다는 등 계속적인 제약이 있어 싸워야

했다	1명
⑥ 무응답	12명

5. 유치장에 들어갈 때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25명
② 아니다	42명
③ 무응답	11명

5-1 수치심을 느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① 비밀스런 곳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옷을 모두 벗고 신체검사를 할 때)	1명
② 발가벗기는 것	1명
③ 신체검사시 집단적인 탈의	1명
④ 옷을 벗어 보였다	1명
⑤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때	4명
⑥ 타인에게 인권을 무시당한 것 같았다	1명
⑦ 알몸으로 검사를 받고 항문을 손으로 까라고 했을 때	2명
⑧ 사람 있는 데서 나 홀로 옷을 벗는 게 부끄러웠다	1명
⑨ 공포 분위기 하에 알몸 수색을 하여 인간적인 모욕감, 모멸감	1명
⑩ 기분이 찜찜함	1명
⑪ 죄인취급하면서 명령적으로 옷을 벗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겁을 줄 때	1명
⑫ 하의를 내리고 항문검사를 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	1명
⑬ 속옷을 다 벗어야 한다	1명
⑭ 알몸 수색 - 남자끼리여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1명
⑮ 항문을 까라고 했을 때	1명
⑯ 가혹한 행위	1명

⑯ 하의를 벗기고 항문을 깨게 했을 때	1명
⑰ 조사를 받고 오면 항상 알몸 수색을 하려 했을 때	1명

6.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 식사는 제공되었습니까?	
① 식사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서 굶었다	0명
② 식사가 제때 제공되었다	30명
③ 식사시간이 지나서 밥을 주었다	1명
④ 식사는 제공되었으나, 음식의 질이 형편없어 돈을 주고 사서 먹었다 (사식 또는 매식)	37명
⑤ 돈이 없을 때는 제공되는 것도 없음	1명
⑥ 무응답	9명

(제공되는 식사를 드신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6-1. 제공되는 식사의 반찬은 평균 몇 가지 종류였습니까?	
① 한 가지	30명
② 두 가지	27명
③ 세 가지	7명
④ 네 가지	2명
⑤ 두 가지 일 때 또는 세 가지 일 때도 있었음	1명

6-2. 제공되는 식사의 반찬 중 대표적인 반찬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① 김치	12명
② 짠지	9명
③ 단무지	28명
④ 콩조림	1명
⑤ 김치 또는 짠지	2명
⑥ 김치 또는 단무지	11명
⑦ 짠지 또는 단무지	3명

⑧ 김치 또는 짠지, 단무지	3명
-----------------	----

7. 유치장의 위생(청결)상태는 어떠했습니까?

① 깨끗했으며 청소도 잘되어 있었다	17명
② 적당했다	35명
③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다	16명
④ 이불이 더럽다	1명
⑤ 무응답	9명

8. 유치장의 환기상태는 어떠했습니까?

① 환기가 잘되었고, 실내 공기가 맑았다	10명
② 보통이었다	35명
③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했다	22명
④ 기타(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	1명
⑤ 무응답	10명

9. 유치장의 조명상태는 어떠했습니까?

① 적당한 밝기여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었다	13명
② 적당했다	34명
③ 너무 어두워서 생활하기 불편했다	19명
④ 너무 밝았다	1명
⑤ 무응답	11명

10. (여름에 갇혔던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냉방시설이 가동되었습니다?

① 일체의 냉방시설이 없었다	12명
② 냉방시설이 있었으나 틀어주지 않았다	3명
③ 냉방시설을 틀어주었다	14명
④ 무응답	49명

11. (겨울에 간했던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난방시설이 가동되었습니까?

① 일체의 난방시설이 없었다	10명
② 난방시설이 있었으나 틀어주지 않았다	4명
③ 난방시설을 틀어주었다	27명
④ 기타(모르겠다)	1명
⑤ 무응답	36명

11-1. 유치장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면 어떤 시설이었습니까(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감방 안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2명
② 감방 안에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0명
③ 감방 안에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2명
④ 감방 안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다	13명
⑤ 감방 안에 스팀이 설치되어 있었다	1명
⑥ 감방 안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다	1명
⑦ 감방 안에 기타가 설치되어 있었다	2명
⑧ 복도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2명
⑨ 복도에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10명
⑩ 복도에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6명
⑪ 복도에 스팀이 설치되어 있었다	1명
⑫ 복도에 기타가 설치되어 있었다	3명
⑬ 무응답	40명

12. (겨울에 간했던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담요나 모포 등 추위를 막기 위한 물품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지급받았다	21명
② 지급받지 못했다	0명
③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다	11명
④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추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6명

⑤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고 추운 것은 마찬

가지였다 ..... 4명

⑥ 무응답 ..... 36명

13. 유치장에 들어갈 때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를 풀어주었습니까?

① 그렇다	55명
② 아니다	5명
③ 경우에 따라 달랐다.	2명
④ 무응답	16명

14. 유치장 안에서도 계구를 착용하였다면 어떤 계구였습니까(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수갑	10명
② 포승	0명
③ 사슬(연쇄)	0명
④ 족쇄	0명
⑤ 수갑과 포승	2명
⑥ 기타	3명
⑦ 기타 없음	1명
⑧ 무응답	62명

15. 유치장에서 화장실 사용은 자유로웠습니까?

① 화장실이 감방 안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62명
② 화장실이 감방 밖에 있었으나 직원의 허락을 받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4명
③ 화장실에 가려면 직원들의 심한 간섭을 받아야 했다	0명
④ 무응답	12명

16. 유치장 화장실의 위생상태는 어떠했습니까?

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14명
② 보통이었다	48명
③ 사용하기 싫을 정도로 더러워 불쾌했다	7명
④ 기타(깨끗하긴 하나 수용자가 청소를 한다)	1명
⑤ 무응답	8명

17. 화장실에 차폐막(가리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23명
① 그렇다	14명
② 아니다	32명
③ 설치되어 있었지만 수치심을 느낄 만큼 낮았다	9명
④ 무응답	

18. 계구를 착용했던 분은 화장실에 갈 때는 계구를 풀어주었습니까?	6명
① 그렇다	8명
② 아니다(계구를 착용하고 용변을 봐야 했다)	2명
③ 경우에 따라 달랐다	62명
④ 무응답	

19. 유치장에 비치돼 있던 일상용품은 무엇이었습니까(모두 골라 주십시오)?	1명
① 수건	2명
② 비누	0명
③ 칫솔	0명
④ 치약	6명
⑤ 휴지	0명
⑥ (여자의 경우) 생리대	13명
⑦ 기타	3명
⑧ 개인이 구입	3명
⑨ 없었다	

⑩ 수건과 비누	2명
⑪ 비누와 휴지	4명
⑫ 수건, 비누, 치약	5명
⑬ 비누, 치약, 휴지	1명
⑭ 수건, 비누, 칫솔, 치약	1명
⑮ 수건, 비누, 휴지, (여자의 경우) 생리대	1명
⑯ 비누, 칫솔, 치약, 휴지	1명
⑰ 수건, 비누, 칫솔, 치약, 휴지	21명
⑱ 수건, 비누, 칫솔, 치약, 휴지, (여자의 경우) 생리대	1명
⑲ 휴지, 소금	1명
⑳ 무응답	12명

20. 유치장에서 세수와 목욕(샤워)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12명
① 언제나 자유롭게 씻을 수 있었다	12명
② 정해진 시간에는 자유롭게 씻을 수 있었다	5명
③ 씻는 것은 직원들의 맘대로였다	5명
④ 세면시설은 있었지만 목욕(샤워)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34명
⑤ 기타	6명
⑥ 자유롭게 씻을 수는 있었지만 세면용품을 지급하는 시간이 정해져 그 시간 이외에는 씻을 수 없었다	1명
⑦ 요청하면 되도록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2명
⑧ 정해진 시간에는 자유롭게 씻을 수 있었다. 다만, 세면시설은 있었지만 목욕(샤워)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명
⑨ 씻는 것은 직원들의 맘대로였다. 세면시설은 있었지만 목욕(샤워)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명
⑩ 씻는 것은 직원들의 맘대로였으나 정해진 시간에는 자유롭게 씻을 수 있었고, 세면시설은 있었지만 목욕(샤워)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명
⑪ 무응답	10명

20-1. 유치장에서 하루 몇 번 양치질을 할 수 있습니까?

- |                            |     |
|----------------------------|-----|
| ① 세끼 식사후 모두                | 25명 |
| ② 아침과 저녁 두번                | 19명 |
| ③ 한번                       | 16명 |
| ④ 기타                       | 4명  |
| ⑤ 두번 또는 세번                 | 1명  |
| ⑥ 한번도 없었다                  | 1명  |
| ⑦ 양치용구를 주지 않아 한 번도 할 수 없었다 | 1명  |
| ⑧ 양치질이 허용되지 않았다            | 1명  |
| ⑨ 무응답                      | 10명 |

21. 유치장에서 돈, 담배, 귀중품 등의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 |       |     |
|-------|-----|
| ① 그렇다 | 18명 |
| ② 아니다 | 46명 |
| ③ 무응답 | 14명 |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21-1. 어떤 소지품을 빼앗겼거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까?

- |           |    |
|-----------|----|
| ① 담배      | 4명 |
| ② 담배와 라이터 | 7명 |
| ③ 담배와 명함  | 1명 |
| ④ 돈       | 1명 |
| ⑤ 시계      | 4명 |
| ⑥ 핸드폰     | 1명 |

21-2. 누가 소지품을 빼앗고 돌려 주지 않았습니까?

- |          |     |
|----------|-----|
| ① 경찰 공무원 | 12명 |
|----------|-----|

- |              |     |
|--------------|-----|
| ② 의경이나 전경    | 7명  |
| ③ 동료 수감자     | 0명  |
| ④ 경찰, 의경, 전경 | 1명  |
| ⑤ 기타         | 2명  |
| ⑥ 무응답        | 56명 |

22. 유치장에서 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그렇다                    | 6명  |
| ② 아니다                    | 49명 |
| ③ 다른 사람이 맞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 1명  |
| ④ 무응답                    | 22명 |

22-1.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면 누가 가혹행위를 했습니까?(중복응답 포함)

- |              |    |
|--------------|----|
| ① 경찰 공무원     | 4명 |
| ② 의경이나 전경    | 3명 |
| ③ 동료 수감자     | 0명 |
| ④ 기타         | 3명 |
| ⑤ 없다         | 1명 |
| ⑥ 경찰, 의경, 전경 | 1명 |

22-2. 어떤 이유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했고, 어떤 종류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까(구체적으로 써 주시오)?

- |   |    |
|---|----|
| ① 다른 사람이 맞는 것을 목격—반입금지 품목인 핸드폰을 반입했다가 몇 대 맞는 것을 목격했다. | 1명 |
| ② 없습니다  | 1명 |
| ③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고                                      | 1명 |
| ④ 시끄럽다고   | 1명 |
| ⑤ 사사로운 말싸움 끝에   | 1명 |

- ⑥ 증거물을 내 놓으라면 무릎을 끊리고 형사들이 발과 고관절 부위를 차고 손에 불펜을 끼워 돌리기도 하면서 위협을 가했다 ..... 1명
- ⑦ 1985년 강남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수감되는 중 형사에 의한 무차별 구타에 이어서 형사의 명령에 의한 전경들의 집단폭력을 당했다 ..... 1명
- ⑧ 화성경찰서에 잡혔을 때 차안에서 수갑을 채우고 온 몸을 많이 맞았다 수갑을 너무 세게 채워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 감각이 없었다 ..... 1명
- ⑨ 경찰조사 중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6명으로부터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였고 병원조차 보내주지 않았다. 온 몸을 구타당한 후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들은 기절해 있는 본인을 수갑으로 결박한 후 1회용 종이컵에 물을 떠다가 뿌려가면서까지 계속 구타를 하였다. 경찰서에서 의정부교도소로 보내진 후 그곳 소장님의 배려로 비로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1명

23. 유치장에서 아팠을 때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가능했습니까?

- ① 그렇다 ..... 8명
- ② 아니다 ..... 10명
- ③ 아픈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 42명
- ④ 무응답 ..... 18명

24. 유치장에 있을 때 여성과 남성의 거실이 서로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 수치감을 느끼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14명
- ② 아니다 ..... 42명
- ③ 기타 화장실 벽(칸막이)이 낮아서 수치감을 느꼈다 ..... 1명
- ④ 무응답 ..... 21명

25. 검찰의 구치감과 비교하여 경찰의 유치장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① 밖이 안 보인다 ..... 1명

- ② 식사할 때 반찬이 한 가지밖에 없다 ..... 1명
- ③ 별 문제 없다 ..... 1명
- ④ 칫솔을 사용할 수 없었다 ..... 1명
- ⑤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 1명
- ⑥ 음식과 세탁문제 ..... 1명
- ⑦ 둘 다 불결, 환기 안됨, 특히 유치장 모포는 너무 불결 ..... 1명
- ⑧ 식사의 질이 너무 나쁘고 공기가 더럽고 모포도 지저분하다 ..... 1명
- ⑨ 냉난방 시설이 안 좋고, 특히 식사는 경찰서 유치장은 1일 식사 (콩보리밥에 단무지 1개)가 매번 같은데 비해 검찰청 구치감은 냉난방시설이 잘되어 있고, 식사는 끼니마다 달리 나옴 ..... 1명
- ⑩ 여성과 남성이 보이기 때문 ..... 1명
- ⑪ 몸이 아파 병원에 보내주거나 치료를 요구하였지만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 1명
- ⑫ 모르겠다 ..... 1명
- ⑬ 다 보이고 화장실 문턱이 낮고 경찰들의 지시가 일방적이다 ..... 1명
- ⑭ 수건, 비누, 치약, 칫솔 등이 거실 내에 있지 않아 불편하다 ..... 1명
- ⑮ 경찰서 유치장은 조용해서 편했는데 검찰 구치감은 너무 시끄럽다 ..... 1명
- ⑯ 경찰서 유치장은 반말, 욕설, 구타행위와 담요, 음식, 환기, 채광 등 환경이 열악함 ..... 1명
- ⑰ 둘 다 마찬가지다 ..... 1명
- ⑲ 시설과 위생상태 ..... 1명
- ⑳ 전반적으로 양호함 ..... 1명
- ㉑ 훨씬 좋았다 ..... 1명
- ㉒ 신문을 볼 권리를 박탈하고 생활공간 전면이 개방되어 있어 사생활이 전혀 없다 ..... 1명
- ㉓ 유치장 청결 상태 등이 훨씬 낫다 ..... 1명
- ㉔ 무응답 ..... 56명

## IV. 부 록

- 본회 집행부 임원 및 인권위원회 위원명단
- 인권위원회 활동일지
- 정보공개청구서 및 소장
- 교정시설 현황자료 회신
- 관련 법규(국내 행형법 및 시행령, 독일 행형법)

## 본회 집행부 임원 및 인권위원회 위원명단

### 본회 집행부 임원 명단

회장 朴在承

제1부회장 禹晶權

제2부회장 李重光

총무이사 柳重遠, 재무이사 成旼燮, 사업이사 林榮和, 섭외이사 朴燦運,

법제이사 黃德南, 회원이사 李萬守

### 인권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朴永立

부위원장 尹鍾顯

간사 張喆雨

위원 康錦實, 金度亨(고려빌딩), 金正薰, 金柱永, 金珍, 金振漢, 金熙洙,  
朴星民, 朴淵徹, 朴容逸, 朴炯錫, 沈希靜, 安相云, 安泳燾, 柳元錫, 尹琪源,  
李國宰, 李錫允, 任統一, 全承萬, 車炳直, 崔洙榮, 崔永道, 崔晶植, 韓錫宗

###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李國宰

간사 李相姬

위원 金珍, 金熙洙, 朴永立, 朴燦運, 朴喆民, 朴炯錫, 安相云, 林榮和, 張喆雨,  
崔載千, 韓錫宗  
吳昌翼(인권실천시민연대), 康海貞(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위원회 활동일지

2001. 2.27. 제1차 회의 : 위원장에 박영립, 부위원장에 윤종현, 간사에 장철우 변호사를 선임·호선하고, 2001년도 본회 인권위원회 사업방향 등 논의.
2001. 3.19. 제2차 회의 : 관내 구치소 및 경찰서 유치장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시민·인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의.
2001. 4. 9. 제3차 회의 : 관내 구치소 및 경찰서 유치장 실태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안상운(위원장), 김도형, 김희수, 박형석, 장철우 변호사를 선임.
2001. 5. 9. 조사소위원회 : 구금시설의 조사목적, 조사주체, 조사방법, 조사결과 활용방안 등 논의.
2001. 5.14. 제4차 회의 : 서울지방검찰청 관내 교도소, 구치소, 검찰청내 구치감,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유치장을 조사하기 위한 구금시설조사기획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박영립(위원장), 김희수, 박철민(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간사), 박형석, 안상운, 임영화(사업이사), 장철우, 한석종, 최재천 변호사를 선임.
2001. 5.28. 14개 시민·인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인권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
2001. 6. 4. 제1차 구금시설조사기획소위원회 : 구금시설 실태조사시 당직변호사와 국선변호인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의.
2001. 6.11. 제5차 회의 : 구금시설조사기획소위원회 위원으로 박찬운(섭외이사), 이상희 변호사를 추가선임.
2001. 6.14. 인권센터연구소위원회 1차 회의 :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법률문화(준법) 교육 실시 등 논의.
2001. 6.25. 제2차 구금시설조사기획소위원회 : 구금시설 실태조사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상희 변호사를 간사로 선임.
2001. 7.24. 제3차 구금시설조사기획소위원회 : 구금시설 조사대상을 서울·성동·영등포구치소, 안양·영등포·의정부교도소, 서울지검 구치감, 동부·남부·북부·서초경찰서 유치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부·서초경찰서 유치장으로 정하고, 위 조사와 관련하여 법무부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의.

2001. 8.20. 제4차 구금시설조사기획소위원회 : 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을 위한 내부세미나를 3차례 걸쳐 개최하기로 결의.
2001. 9.17. 제6차 회의 : 박찬운 위원으로부터 제1차 내부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을 듣고 위원간 의견 교환.
2001. 9.20. 제5차 구금시설조사기획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에서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
2001. 9.24. 제7차 회의 : 최재천 위원으로부터 제2차 내부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을 듣고 위원간 의견 교환.
- 2001.10.29. 제8차 회의 : 이상희 위원으로부터 제3차 내부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을 듣고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이국재(위원장), 김희수, 박찬운, 박철민, 박형석, 안상운, 이상희, 임영화, 장철우, 최재천, 한석종 변호사를 선임./ 인권센터연구소위원회 2차 회의 : 가칭 변호사명예교사제 시행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로 결의.
- 2001.11.12. 제1차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을 위원으로 추가선임.
- 2001.11.24. 제8차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법무부에 교정예규집 협조요청 공문 발송.
- 2001.11.27. 제2차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 오창익, 유해정 위원이 작성해 온 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관련 자료 검토.
- 2001.12.11. 제3차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 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 검토.
2002. 1.15. 제4차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 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배포방법 등을 논의하고, 법무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키로 결의.
2002. 1.22. 제9차 회의 : 서울·성동·영등포구치소, 안양·영등포·의정부교도소,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 동부·남부·북부·서초경찰서 유치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2002. 1.30. 법무부에 교정예규집 협조요청 공문 재발송.
2002. 2. 5. 위 요청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1999년도판 교정예규집 대신에 2002년도판 교정예규집을 송부하겠다는 회신공문 접수.
2002. 2. 8. 법무부에 구금시설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과 관련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
2002. 2.14. 서울지방경찰청에 구금시설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과 관련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

2002. 2.15. 제5차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 구금시설 설문조사 배포계획을 수립하고, 성동, 종암경찰서를 조사대상으로 추가선정.
2002. 2.19. 설문조사 등과 관련한 협조요청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수용자 교정교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가하다는 회신공문 접수.
2002. 2.22. 3·1절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한 구금시설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2002. 2.25. 본회 인권위원회 박영립 위원장, 장철우 간사, 임영화 사업이사가 구금시설 실태조사 실시 보도자료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배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
2002. 2.28. 3·1절 가석방 출소자 대상 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를 안양, 영등포, 의정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배포.
2002. 3.25. 동부, 남부, 북부, 서초, 성동, 종암경찰서 유치장 시설조사 실시.
2002. 4. 6. 법무부에 구금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한 재협조요청 공문 발송.
2002. 4.11. 위 재협조요청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조사는 불가하나 참관은 가능할 것 같다 는 회신공문 접수.
2002. 4.13. 서울·성동·영등포구치소, 안양·영등포·의정부교도소에 구금시설 참관과 관련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 대검찰청에 구금시설 참관 관련 협조요청 공문 발송.
2002. 4.17. 구금시설 참관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영등포구치소로부터 부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회신공문 접수.
2002. 4.18. 서울지검 구치감 참관 협조요청에 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지검에 조치 했다는 회신공문 접수.
2002. 4.22. 서울·성동·영등포구치소, 안양·영등포·의정부교도소, 서울지검 구치감에 대한 시설조사 실시.
2002. 5.10. 제10차 회의 : 김진, 이상희, 장철우, 한석종 위원이 작성한 구치소, 교도소, 구치감 및 경찰서 유치장 시설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김진, 한석종 변호사를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위원으로 추가선임.
2002. 5.27. 법무부에 구금시설 현황자료 협조요청 공문 발송.
2002. 6.10. 위 요청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법무연감을 참조하라는 회신공문 접수.
2002. 6.14. 제11차 회의 : 구금시설 실태 조사보고서를 권리구제, 건강·의료, 징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기로 결의.
2002. 6.27. 법무부에 구금시설 현황자료 재협조요청 공문 발송.

2002. 7. 6. 법무부에 교정예규집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2002. 7.11. 제6차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 구금시설 실태 조사보고서를 간행하기로 결의하고 권리구제 부분은 이상희, 시설조사 및 건강·의료 부분은 김희수, 징벌 부분은 김진, 구치감 부분은 한석종, 유치장 부분은 장철우 변호사가 집필하기로 결의.
2002. 7.19. 구금시설 실태 조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유치장 관리 규칙 및 운영세칙 등의 협조요청 공문 발송./ 법무부 및 서울지검에 구치감 관리규칙 및 운영세칙 등의 협조요청 공문 발송./ 법무부로부터 교정예규집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회신공문 접수.
2002. 7.22.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현황자료중 일부 자료 접수.
2002. 7.30.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구치감 관리규칙 및 운영세칙 등 서울지검이나 각 지청에서 별도로 제정한 규칙이나 운영세칙은 없고, 대통령령이나 훈령에 의해 구치감이 운영되고 있다는 회신공문 접수.
2002. 7.31. 법무부로부터 구치감 관리규칙 및 운영세칙 등은 없고, 행령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회신공문 접수.
2002. 8.14.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유치장 관리규칙 및 운영세칙은 없고,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훈령 제352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훈령 제301호), 유치장설계표준규칙(훈령 제301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회신공문 접수.
2002. 9. 6. 제7차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 구금시설 실태 조사보고서 초안 검토.
2002. 9.11.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본회를 원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
2002. 9.18. 제8차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 구금시설 실태 조사보고서 초안 검토.
2002. 9.25. 제9차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 구금시설 실태 조사보고서 발간 계획 등 수립.
- 2002.10.17. 제12차 회의 : 구금시설 실태 조사보고서 발간 및 보고대회 계획 등 수립
- 2002.10.28. 보고서 발간 및 보고대회

#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인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재승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영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1(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락처 : 02-3476-0986, 02-3476-6000, 구내번호 205)

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공개를 요하는 정보의 표시  
교정규칙 및 예규 목록과 교정규칙 및 예규 일체

## 청구 이유

- 1) 본회는 행정제도의 개선과 관련법규의 개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에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를 두어 우리나라의 구금시설과 관련법규를 조사·연구하고 있습니다.
- 2) 위와 관련하여 귀부에서 발간·사용중인 1999년판 교정예규집과 2002년도에 발간예정인 교정예규집이 꼭 필요한 자료라 생각되어 귀부에 요청하였으나 2002년도 교정예규집이 발간되면 1부를 기증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3) 그러나 본회의 위 연구는 1999년판과 2002년판을 비교·연구해야 가능한 것이기에 부득이 1999년판 교정예규집의 공개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 공개의 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

## 기타

우편으로 접수하나 접수증을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방법은 우편이나 팩스(02-3476-809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2. 7. 3.

청구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재승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영립

법무부장관 귀하

# 소장

원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1(변호사회관)  
대표자 회장 박재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Tel.3458-0919, Fax.554-642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6층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  
법무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427-720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2. 7. 19.자로 한 '교정규칙 및 예규목록과 교정규칙 및 예규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서울지부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인 바, 아래와 같이 검찰·행  
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피고에 대하여 교정규칙·  
예규목록과 교정규칙·예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거부처분을 당하였  
습니다.

## 2. 이 사건 처분의 내용

원고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구금시설 실태와 관련법규를 조사·연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원고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현 행정제도 및 관련법규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2. 1. 30. 법무부에서 발간한 교정 규칙·예규 목록과 교정규칙·예규 일체(피고로부터 유선으로 1982년과 1999년 두 차례에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듣고 1999년에 개정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의 공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인 교정시설의 보안관련 사항과 함께 교정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1999년판 교정예규집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송부해 주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02. 3.부터 설문조사 및 구금시설 방문조사를 통하여 구금시설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기에 2002. 3. 적용된 교정규칙과 예규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언제까지 피고의 개정작업만을 기다릴 수 없어, 2002. 7. 3. 정식으로 피고에 대하여 교정규칙·예규의 목록이 기재된 문서와 교정규칙·예규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02. 7. 19. 공개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 부당합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1)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한 내용이고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 보유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 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제3조가 정보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위 법률 제7조가 예외적인 공개 제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비공개 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이 이를 이용하거나 도주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등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전주지방법원 1999. 12. 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그 동안 소외되어 온 재소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구금 시설의 실태와 행정정책을 검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관련 법 규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동안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변호사단체에서 행형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여온 반면, 우리의 경우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재소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행형실태와 정책을 검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재소자 인권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장

기본이 된 교정예규, 규칙부터 검토하고자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재소자들이 사고를 야기하거나 도주할 구체적인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 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동안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집행한 점에 대하여 전혀 반성은 하지 않은 채 '1999년판 교정 예규집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유는 위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소장 부분 1부
2. 위 입증방법
3. 위임장
4. 납부서

2002. 9. 11.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4. 결론

따라서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본 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입증방법

- |              |                      |
|--------------|----------------------|
| 1. 갑 제1호증의 1 | 정보공개청구서              |
| 1. 갑 제1호증의 2 | 우편물배달증명서             |
| 1. 갑 제2호증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 1. 갑 제3호증의 1 | 교정예규집 기증 협조요청        |
| 1. 갑 제3호증의 2 | 교정예규집 기증 협조요청에 관한 회신 |

#### 서울행정법원 귀중

#### 첨부서류

## 법무부

우427-720/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503-7088 /전송  
관리과 과장 김용석 교정관 최윤수 담당자 김중섭

문서번호 관리61423-281

시행일자 2002/07/16 (1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귀하

제목 교정시설 현황자료 협조 제요청에 대한 회신

선	람		지	시
접	일자		결	
수	시간		재	
번호				
처리과				
담당자		공		
		람		
심사자			심사일	

1. 귀 변호사회에서 제요청(서변제2002-714호, 2002.6.27) 하신 교정시설  
현황자료를 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다만, 교정시설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그 시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보안이 요청되는 바, 수용 정원과 현원, 각 사방(거실)별 수용 정원과 현 수용인원, 남·여 각 수용인원, 기타 시설 등 구체적인 현황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시설의 규모 등의 예측 가능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불순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등 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요청하신 자료 일부를 회신하여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교정시설 현황 1부. 끝.

법무부장관

## 교정시설 현황

### 1. 각 교정기관 시설현황

○ 개소년도, 총면적, 사동수

구 분	서 울(구)	안 양(교)	영등포(구)	성 동(구)	영등포(교)	의정부(교)
개소년도	1987	1963	1969	1977	1968	1982
총면적(m <sup>2</sup> )	21,116	37,213	17,621	25,799	29,626	23,836
사동수	19	9	12	14	21	11

### 2. 각 교정기관 직원현황

불임 직제표 참조

### 3. 각 교정기관 수용자 현황

○ 임산부, 대동유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서 울(구)	안 양(교)	영등포(구)	성 동(구)	영등포(교)	의정부(교)
임산부	4	0	1	0	0	0
대동유아	0	0	0	0	0	0

### 4. 각 교정기관 의료현황

○ 환자현황

구 分	서 울(구)	안 양(교)	영등포(구)	성 동(구)	영등포(교)	의정부(교)
인 원	94	56	44	76	44	57
주요질환	정신질환 순환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폐결핵 등	고 혈 압 내분비계 골 격 계 소화기계 전염병 등	심장질환 폐 결 혼 정신질환 소화기계 외과 등	고 혈 압 순환기계 내분비계 폐 결 혼 정신질환 등	내분비계 골 격 계 고 혈 압 순환기계 호흡기계 신경계 등	내분비계 고 혈 압 순환기계 호흡기계 전염병 등

○ 의료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分	의 사		약 사		간호사		방사선사		간 호 조무사	공중보 건의사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4	11	3	3	11	11	2	2	21	3
서 울(구)	4	3	1	1	2	2	1	1	3	1
안 양(교)	3	2	1	1	2	2			6	1
영등포(구)	2	2			2	2			2	
성 동(구)	2	1	1	1	2	2	1	1	5	
영등포(교)	2	2			2	2			2	
의정부(교)	1	1			1	1			3	1

\* 비전임의사는 없으며,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 2001년도 의료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分	서 울(구)	안 양(교)	영등포(구)	성 동(구)	영등포(교)	의정부(교)
의 료 비	146,893	146,502	103,232	155,140	91,186	74,318

○ 2001년도 외부병원 진료현황

구 分	서 울(구)	안 양(교)	영등포(구)	성 동(구)	영등포(교)	의정부(교)
진료인원	344	288	215	113	306	248
주요질환	안과질환 소화기계 꼴 절 심장질환 입산부등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꼴 격 계 신경계등	꼴 절 종 양 심장질환 고 혈 압 안 과 등	꼴 절 고 혈 압 귀 질 환 안과질환 임산부등	안과질환 고 혈 압 내과질환 간장질환 협심증등	감각기계 꼴 격 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안과질환등

○ 의료장비 현황

구 分	장 비 명	비 고
서 울(구)	X-Ray직찰기, X-Ray현상기, 치과유니트, 치과X-Ray기, 심전도기, 기관삽입기, 후두경, 혈압계, 혈당측정기, 검안경, 이경, 자외선소독기, 적외선치료기, 석고절단기, 약포장기, 태아심음, 연막소독기, 훨체어, 환자운반카 등	
안 양(교)	X-Ray직찰기, X-Ray현상기, 치과유니트, 치과X-Ray기, 생화학분석기, 심전도계, 스트레江北, 전자체중계, 석고 절단기, 강력흡입기, 고압멸균기, 현미경, 연막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혈당측정기, 약포장기, 환자운반카, 훨체어 등	
영등포(구)	X-Ray직찰기, X-Ray현상기, 치과유니트, 치과X-Ray기, 석고 절단기, 연막소독기, 현미경, 고압멸균기, 치석제거기, 심전도계, 전자혈압계, 혈당측정기, 약포장기, 환자운반카, 훨체어 흡입기 등	
성 동(구)	X-Ray직찰기, X-Ray현상기, 치과유니트, 치과X-Ray기, 심전도계, 약포장기, 방역소독기, 산소호흡기, 흡입기, 석고 절단기, 산소공급기, 혈압계, 청진기, 혈당측정기, 치과유닛체어, 치과흔홍기, 초음파치석제거기, 기공용엔진, 공기압축기, 구강거울, 치과용주사기, 치기공발치감자, 중기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환자운반차, 진찰대, 훨체어, 시력검사판, 신장측정기, 스텐드, 현미경, 전자저울, 혈당측정기 등	
영등포(교)	X-Ray직찰기, X-Ray현상기, 치과유니트, 치과X-Ray기, 심전도계, 고압멸균기, 연막소독기, 석고절단기, 혈당측정기, 산소호흡기, 치석제거기, 디싱에어드라이, 훨체어, 환자운반카, 전자혈압계, 약포장기 등	
의정부(교)	X-Ray직찰기, X-Ray현상기, 치과X-Ray기, 아말감의서기, 방역소독기, 현미경, 치과유니트, 고압멸균기, 산소호흡기, 혈당측정기, 심전도계, 석고절단기, 콤프레샤, 강력흡입기, 약포장기 등	

○ 보유약품 현황

기 관 명	약 품 명	비 고
서 울(구)	<p>기모타부, 다이크로짓드, 다이아비네즈, 둘코락스, 듀스파티린, 페니토인(디란친), 멜타코데프, 라식스, 로페라, 로날, 리단, 리팜핀, 린놀셀, 마로비벤, 탐부톨, 메러릴, 미니프레스, 두리방, 바리핀, 아콜, 바이브라, 부스코판, 이루시루민, 빠콤, 셀비다제, 크로세린, 타리비드, 프레치온아미드, 에리시도, 파라진아마이드, 로시스로마이신, 세레탐, 시네칸, 복합CPX, 시메티딘, 세파렉손, 셱트린, 아목사실린, 아스토신, 아미노필린, 베노트좌약, 액티피드, 오르필, 오페라진, 염산아미트리폰탈린, 바루나, 이브부로펜, 인데놀, 유한짓, 지미코, 지노베타딘, 코데농, 헤로세친, 네오마진(세파민), 테라사이클린, 테소푸렐, 테소푸렐, 트리티코, 트리민, 타이레놀, 페니라민, 폴라스톤(베다라민), 폰탈, 피리독신, 피록시캄, 탈시드, 안티로이드, 아달라트, 디텐트(아테놀올), 아세트아미노펜, 카소딜, 도란사민, 녹단, 파시진, 후로스판, 베리코트, 에르고메트린, 폴비단, 달마돈, 텍토팜, 바리움(주), 아티반, 아티반(주), P-B, 펜타조신(주), 루미날(주), 가마제핀, 테그레톨, 아졸락, 졸민, 벤즈트로핀, 디곡신, 니트로글리세린, 염산페치딘(주), KM, GM, 라식스, 리도카인, 린코신, 마로비벤(주), 범피린(주), 부스코판(주), 빠콤(주), 세리파진(주), 브로드세프, 스파랭, 아미노필(주), 아루펜트(주), 에스트(주), 오라메션(주), 콘락스(주), 페니라민(주), 헤로세친(주), 트로비신(주), 노보린N, 노보린R, 아도나민(주), 폰트릴(주), D/S, 크리티드, D/W, 하트만, 세파민(주), 파토나디움, V-K(주), 프로게스트(주), 스트렙토마이신(주) 등</p>	
안 양(교)	<p>아세트아미노펜, 액티피드, 아달라트오로스, 부민(주), 알마계이트, 아마릴, 아미노푸신(주), 아목사펜, 안티로이드, 아로탈, 아코빈, 아스피린, 아스페직(주), 베이비아스피린, 아스트릭스, 아타칸, 아트로핀, 아진탈, 빠콤, 벤즈트로핀, 베로텍, 베로텍에어솔, 벤토린, 비사코딜, 범피린(주), 부스코판(주), 부스코판, 벤조리논, 카맥스, 세프라딘, 세프악손(주), 셀비다제, 클로람페니콜, 클로람페니콜(주), 신일겔, 다이미트, 멜타코데프, 다이아비네스, 다이크로짓, 디곡신, 디곡신(주), 둘코락스, 에비오제, 에나폰, 에필렐롤, 에페드린(주), 후라베린큐, 후시딘, 후리코, 젠타마이신(주), 글루코파지, 하트만덱스(주), 하트만용액(주), 하이트린, 에취투, 아이나(유한짓), 이부프로펜, 염산이미프라민, 이소켓, 인슬린(주), 콘락스(주), 라그톨, 라식스(주), 라식스, 린코마이신(주), 마로닌, 마로비벤(주), 메티마졸, 메치오닌, 맥소롱, 맥소롱(주), 마그네슘옥사이드, 미니프레스, 미란타, 모노프릴, 니트로글리세린, 네오마진, 노바스크, 오라텍손(주) 등</p>	

기 관 명	약 품 명	비 고
영등포(구)	<p>아세트아미노펜, 액티피드, 알닥타자이드, 알루펜트, 안티로이드, 엠셀린, 아달라트, 아미노필린, 빠콤, 비졸본, 부스코판, 세프라딘, 치이타, 코프렌, 씨롱, 둘코락스, 보나링, 페니토인, 글루레노름, 헬로세친, 헬시콜시티, 유한짓, 인데놀, 케이완, 라식스, 로프민, 맥페란, 미니프레스, 마이암부톨, 판우디, 피라진아미드, 피리독신, 푸라콩, 소론도, 리팜핀, 로날, 린락사, 타가메트, 탈시드, 테라사이클린, 유미덕, 엠코틴, 베토린흡입기, 아티반, 벤조트로핀, 네오마진, 달마듬, 에트라빌, 페노바르비탈, 바리암, 디고신, 니트로글리세린, 세파민(주), 바리움(주), 아미노필린(주), 아트로핀(주), 알타질(주), 범피린(주), 부스코판(주), 비졸본(주), 세파졸린, 하트만, 생리식염수, D/W, 젠타마이신(주), 카나마이신(주), 린코신(주), 맥페란(주), 오라텍손(주), 푸라콩(주), 트리돌(주), 외파리도카인(주), 테타볼린(주) 등</p>	
성 동(구)	<p>글루코바이, 기모타부, 노바스크, 다오닐, 다이아비네스, 다이크로진, 도란사민, 둘코락스, 디아미크롬, 라식스, 라테올, 레가튼, 로프민, 리단, 리소짐, 리팜핀, 레니프릴, 마이암프롤, 메토클로, 메티마졸, 스파게린, 벤즈트로핀, 베로텍, 베스타제, 부스코판, 비졸본, 비타민씨, 빠콤, 세로날, 세팔렉신, 소론도, 씨메틴, 아달라트, 아목사펜, 아달라트(오로스), 아스피린, 아미노필린, 아세트아미노펜, 알마겔, 암포젤, 액티피드, 에리스로, 아테놀올, 오르필, 유프린, 유한짓, 인데놀, 이소미드, 이미프라민, 이브푸로펜, 치오리다진, 자이로릭, 카두라, 카마제핀, 코데농, 칸다신, 클로마진, 타치온, 테놀민, 페니라민, 페니토인, 펜잘, 푸라콩, 푸렉신, 프레마린, 바리움, 피라세탐, 피리독신, 할리페리돌, 퀘럼포라, 히포케스틴트, 바리움, 자나스, P.B., 할시온, 바리움(주), 트리돌, N.G., 선지, 가나(주), 젠타(주), 린코신(주), 베로텍, 부스코판(주), 빠콤(주), 세파매진, 세파민(주), 소페낙(주), 데사(주), 치파리도카인, 콘락스(주), 트로비신(주), 트리돌(주), 푸라콩(주), 헤로세친(주), D/W, 하트만, 생리식염수, 솔비톨, 페리돌 등</p>	

# 행 형 법

기 관 명	약 품 명	비 고
영동포(교)	페니토인, 리단, 바리움, 벤즈트로핀, P-B, C.P.Z, 리팜핀, 아이나, 탐부를, 피리독신, 미니프레스, 아달라트, 다이아비네스, 리버티, 이피라돌, 그랑콜, 프리마란, 코데농, 아목사펜, C.M, 아세트아미노펜, 키모타부, 폰탈, 노이시린, 리나치올, 안티노이드, 헬시캄, 드라마민, 베노투스, 홀비신, 둘코락스, 판크론, 로프민, 부스코판, 씨롱정, 파모티딘, 타치온, 뼈콤, 비타민C, 데사메타손, 푸라콩, 니트로글리세린, 라식스, 로스타, 메티마졸, 미노시론, 참딜티아젬, 아스피린, 이미프라민, 푸리나제, 트리실린, 알닥톤, 인데놀, 멜리본, 에필헵돌, 트리민, 펠리돌, 아테놀을정 등	
의정부(교)	기모타부, 노바스크, 다오닐, 다이아비네스, 다이크로질, 도란사민, 마로비벤, 미노신, 바리움, 복합아루사루민 비졸본, 뼈콤씨, 세팔렉신, 아목시실린,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트릭스, 액티피드, 애나폰, 유나신, 유시락스, 이스모, 지스로맥스, 콘락스, 타스나, 타가메트, 테놀민, 판크론, 판피린, 후라베린Q, 후라시닐, DW, 생리식염수, 젠타마이신(주), 리메타손(주), 데사메타손(주), 맥페란(주), 쎄프라딘(주), 콘락스(주), 트리돌(주), 타페인(주), GM연고, 트리코트연고, 네리소나연고, 크레졸, 가아제, 옵티클, 포타딘, 암박붕대, 스타킹넷, 롤스프린트 등	

\* 의약품 구입 : 각 수요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필요시마다 구입하고 있음.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형자' 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별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미결수용자' 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용자' 라 함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1조의3 【기본적 인권의 존중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2조 【구분수용】

- ① 교도소에는 만20세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 ② 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 ③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 ④ 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신설 1999.12.28.〉
- ⑤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의 명칭·위치·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전문개정 1995.1.5.]

제3조 【구분수용의 예외】 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안에 미

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② 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4조 【이성의 격리】(개정 1995.1.5.)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제4조의2 【교도소 등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교도소 등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5조 【교도소 등의 순회점검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소 등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② 판사와 검사는 교도소 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도소 등을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0.12.22., 1999.12.28.〉

④ 삭제〈1995.1.5.〉

제6조 【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②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④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신설 1995.1.5.〉

⑤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2.28.〉

⑥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

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제7조 【직무규정】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 제2장 수용

제8조 【신입자의 수용 등】 ① 수용자로서 교도소 등에 신입하는 자(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적법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개정 1995.1.5., 1999.12.28.〉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③ 신입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 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당해 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④ 제3항의 규정은 수용중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28.〉

제8조의2 【고지사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혈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3. 규율·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본조신설 1999.12.28.〕

제9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개정 1995.1.5., 1999.12.28.) 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제10조 【사진촬영 등】 ①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사진촬영·지문채취·수용자번호지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도 소장이 수용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1조 【독거수용】 ①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12.28.〉

②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삭,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개정 1995.1.5.〉

③ 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2.22.〉

제12조【수용자의 이송】(개정 1995.1.5.)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제13조【사형수의 수용】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 제3장 계호

제14조【계구】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③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2.28.〉

④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12.28.〉

제14조의2【강제력의 행사】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기타 교도관 및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교도봉·가스분사기·최루탄 등 보안장비를 사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5조【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험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인명·신체·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교도소 등의 밖에서 작업 또는 호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80.12.22., 1995.1.5., 1999.12.28.〉

③ 제14조의2 제1항 후단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12.28.〉

제16조【수용자의 긴급이송 등】 ① 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 등의 안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② 다른 장소에의 이송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내에 교도소 등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80.12.22., 1995.1.5., 1999.12.28.〉

④ 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9.12.28.〉

제17조【도주자의 체포】(개정 1995.1.5.)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72시간이내에 한하여 교도관은 이를 체포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17조의2【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 등을 출입하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 등의 안